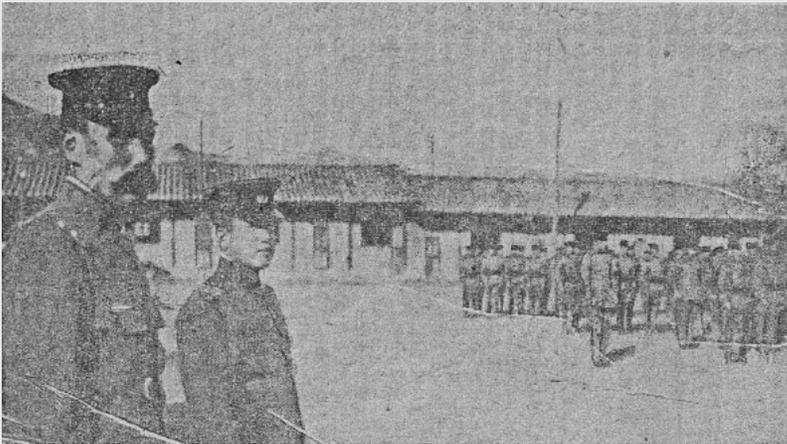


1/ 3.1운동 전후 조선인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일본 육군 내 논의***

박완



조선보병대의 교련을 시찰하는 영친왕 이은(李垕)과 마쓰카와 도시타네(松川敏胤) 조선주치군 사령관
출처: 『매일신보』(毎日申報) 1918년 1월 20일 자 3면.

박완(朴完) 고려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도쿄대학(東京大学) 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인문학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며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다이쇼기(大正期)의 육군을 중심으로 근대 일본 정치·군사사를 주요 연구 테마로 삼고 있다. 논문으로는 「第一次世界大戦期における陸軍派遣武官リスト」(『東京大学日本史学研究室紀要』 제22호, 2018년 3월), 「일본 육군의 '대전의 교훈' 형성 과정과 스토리텔링」(『스토리앤이미지텔링』 제6집, 2013년 12월) 등이 있다.

* 이 논문은 2019년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학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이 글은 2018년도 도쿄대학(東京大学) 제출 박사학위논문 제3·6장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일본비평』 제21호 특집의 취지에 맞도록 새로이 집필한 것이다.

1. 들어가며

‘현대의 기점’으로 평가되는 제1차 세계대전(이하, 1차대전으로 약칭)은 기존의 정치·경제·사회·군사·문화·사상 등 모든 측면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는데, 이는 일본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중에서도 1차대전은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일본의 제국 지배 질서를 동요시켰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1차대전 중에 러시아의 레닌(Vladimir Lenin)과 미국의 윌슨(Woodrow Wilson)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를 제창하고 패전 및 전후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오스트리아-헝가리, 오스만 제국 등이 해체되고, 전 세계적으로 피지배 민족의 독립 기운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둘째는 영국, 프랑스 등의 제국이 인도, 인도차이나, 아프리카 등 식민지의 인적·물적 자원도 전쟁 수행을 위해 동원했다는 점이다.¹ 이와 같이 1차대전 및 식민지 조선에서의 3.1운동 발발을 계기로 일본은 기존의 제국 지배 질서의 재편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이는 육군도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 있다.

제국 일본의 식민지 조선 지배의 물리적 기반이었던 조선 주둔 일본군에 관해서는, 주로 러일전쟁 당시의 한국주차군(韓國駐紮軍)에서 조선주차군(朝鮮駐紮軍), 그리고 조선군(朝鮮軍)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제도적으로 성립되어 가는 과정, 또는 한국 내 의병활동과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전시에는 대륙 침략의 선봉에 섰던 조선군의 역할 등이 주목되어 왔다.²

한편 이와는 다른 각도에서의 연구도 이루어졌다. 즉 3.1운동을 전후하여 조선군은 식민지 조선의 ‘동화’를 구상하고 그 수단으로서 조선인의 군

1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일본 육군도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915년 9월에 1차대전 연구를 위해 설치된 임시군사조사위원회(臨時軍事調査委員)은 1918년 9월에 구미 각국의 주재무관 등에게 1차대전에 관한 정보 수집을 요청했다. 그런데 그 조사 희망 사항 중에는 “식민지 군대, 특히 이 인종(異人種) 군대의 병종·편제 및 그 가치”가 포함되어 있었다(『業務顛末書提出の件』, 일본 아시아 역사자료센터, JACAR Ref.C03025405000, 화상 번호 92, 『歐受大日記』大正13年・3冊之内其3,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2 辛珠柏, 鄭榮桓 譯, 『朝鮮軍概史』, 宋連玉·金榮 編著, 『軍隊と性暴力: 朝鮮半島の20世紀』, 現代史料出版, 2010; 徐民教, 『韓國駐紮軍の形成から朝鮮軍へ: 常設師団の誕生』, 庵道由香, 『朝鮮に常設された第一九師団と第二〇師団』, 坂本悠一 編, 『地域のなかの軍隊 7: 帝國支配の最前線 植民地』, 吉川弘文館, 2015 등.

사적 이용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한국 병합 초기의 동 문제에 관한 조선군의 인식,³ 우쓰노미야 다로(宇都宮太郎) 조선군 사령관 및 조선군의 3.1운동 선후책,⁴ 조선인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육군 내 논의와 이것이 훗날 조선인 지원병 제도 및 징병령 시행으로 이어지는 과정 등이 구명되었다.⁵

이와 같이 독립운동 탄압의 주체이자 스스로 조선의 ‘동화’를 촉진하려고도 했던 조선군의 양면성을 염두에 두면서, 이 글에서는 일본 육군 내에서 조선인의 군사적 이용 및 이를 전제로 한 조선군 증강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었고 3.1운동의 발발은 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조선군은 병합 전후부터 어떠한 형식으로든 한국(조선)인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적극적이었고, 이러한 자세는 3.1운동의 충격 속에서 더욱 명확해졌다. 또한 조선군 측에서 병력 증강을 요청한 것은 군사력으로 조선 지배를 확실히 함과 동시에, 일본 군대에 조선인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 차원의 성격도 있었다. 반면 육군 중앙은 이 문제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양자의 대립 양상 및 그 이유를 밝히도록 하겠다.

2. 한국 병합 이전의 ‘토병’(土兵) 문제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은 1894~1895년의 청일전쟁에서 승리하여 타이

- 3 朴廷鎬, 「近代日本における治安維持政策と国家防衛政策の狭間: 朝鮮軍を中心に」, 『本郷法政紀要』第14号, 2005, 233쪽; 이형식, 「조선헌병사령관 立花小一郎과 ‘무단동치’: 『立花小一郎日記』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57호, 2012, 292~298쪽; 李炯植, 『朝鮮總督府官僚의統治構想』, 吉川弘文館, 2013, 42~45쪽.
- 4 吉良芳恵, 「宇都宮太郎關係資料から見た三・一獨立運動: 陸軍中央との關係を中心に」, 『史艸』 第46号, 2005; 김동명, 『지배와 저항, 그리고 협력: 식민지 조선에서의 일본제국주의와 조선인의 정치운동』, 경인문화사, 2006, 42~49쪽; 吉良芳恵·宮本正明, 「解題 大正時代中期の宇都宮太郎: 第四師団長・朝鮮軍司令官・軍事參議官時代」, 宇都宮太郎關係資料研究会 編, 『日本陸軍とアジア政策: 陸軍大將宇都宮太郎日記 3』, 岩波書店, 2007(이하 『宇都宮日記 3』으로 약칭); 宮本正明, 「宇都宮太郎と朝鮮支配」, 安田常雄·趙景達 編, 『近代日本のなかの「韓国併合」』, 東京堂出版, 2010 등.
- 5 戸部良一, 「朝鮮駐屯日本軍の実像: 治安・防衛・帝国」, 日韓歴史共同研究委員会 編, 『日韓歴史共同研究報告書 第3分科篇下巻』, 日韓歴史共同研究委員会, 2005, 399~405쪽.

완(臺灣)을 획득함으로써 처음으로 해외 식민지를 소유한 제국이 되었다. 그런데 청일전쟁 및 타이완 정복 전쟁이 일단락된 1896년 10월에서 이듬해 1월까지 아카시 모토지로(明石元二郎) 참모본부 제3부 부원은 가와카미 소로쿠(川上操六) 참모본부차장을 수행하여 타이완,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타이 등을 시찰했다. 이는 육군의 관점에서 프랑스의 식민지 지배 정책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특히 아카시는 “토민병(土民兵)의 편성, 교육 및 이에 속하는 프랑스 간부의 비율”을 주요 연구 목적 중 하나로 설정했다.⁶

이러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아카시가 작성한 것이 바로 「타이완 시찰 의견」(臺灣島視察意見)이다. 여기서 그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식민지 타이완인들을 ‘토(민)병’으로 이용할 것을 주장했다.

군사 면에서도 토인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원래 본국의 정예 군대를 다수 주둔시킬 경우에는 그 비용 증가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그 기후·풍토에 익숙지 않다는 점에서 수많은 병자를 발생시키기에 이를 것임은 이미 오늘날까지의 경험에서 명백한 바이다. 따라서 토민병(土民兵)을 모집하여 본국병(本國兵)을 보조함으로써 국고 부담을 경감할 것을 꾀해야 한다.⁷

즉 아카시는 타이완 점령 전쟁의 쓰라린 경험⁸에서 식민지 군대 주둔 비용을 절감하고 풍토병 등으로 인한 병력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타이완인들을 토병으로 모집하여 일본 군대의 보조 병력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그 외에도 “원래 토병 제도는 세계 각국의 식민지에서 전부 채용”하고 있고, 또 “토적(土賊)·강도의 무리”에 대해 일본의 정예 군대를 투입할 필요

6 村田保定 編, 『明石大將越南日記』, 日光書院, 1944, 133쪽. 또한 토민병과는 별도로 식민지 주민들을 조직·훈련하고 병기를 대어함으로써 촌락을 자체 방어하도록 하는 “호향병(護郷兵)의 성질, 교육, 병기 수여 및 복역 연령 등”도 연구 목적에 포함되어 있었다.

7 村田保定 編, 『明石大將越南日記』, 162쪽. 이하, 사료 인용에서 인용자가 추가한 부분은 대괄호로 묶고 연도 표기는 서력으로 통일했다.

8 일본은 시모노세키(下關) 강화조약 체결 후인 1895년 5월에 타이완 북부에 군대를 상륙시켰는데, 이듬해 3월에 현지 주민의 저항을 거의 진압할 때까지 총 1만 명이 넘는 전사자와 병사자가 발생했다(坂本悠一 編, 『地域のなかの軍隊 7: 帝国支配の最前線 植民地』, 17~18쪽).

없이 “토민으로 토민의 해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구미 제국의 선례 및 ‘이이제이’(以夷制夷)를 통한 식민지인 분열책의 측면에서도 토병 편성을 정당화했다.⁹

그런데 아카시는 타이완인을 일본 군대에 받아들이는 것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도 인지하고 있었다. 즉 그는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토병과 “그 본국병 간의 비례” 문제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 것이다.

만약 토병보다 본국병의 수가 적다면 본국병의 위신이 무거워지지 않고 더 나아가 모국의 실력을 의심하기에 이를 것이다. ... 따라서 어쨌든 본국병으로 하여금 토병을 압도하기에 족한 힘을 갖추도록 하고 그 간부는 오로지 본국 출신자로 하여금 이를 통제하도록 한다면 토병이 우리에게 쓸모가 있을 것임은 의심할 수 없다.¹⁰

그렇다면 아카시가 이상적으로 본 타이완 주둔 병력 및 그 안에서의 본국병과 토병의 비율은 어떠했는가. 우선 그는 부족한 경찰력으로 현지 주민의 저항을 진압하고 유사시에 자력으로 타이완을 방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3개 혼성여단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¹¹ 그러면서 1897년 말부터 토병 모집을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상을 제시했다.

1897년 12월에 보병 각 여단별로 토인 보병 500명을 모집한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양호하다면 매년 500명씩 모집한다. ... 이러한 토병의 증가에 따라 차츰 본국에서 보충하는 병력 수를 줄이고 ... 이와 같이 6년을 기하여 본국 보병을 3개 연대 즉 9개 대대(각 여단별로 1개 연대의 비율)로 하고, 토병을 3개 연대 즉 1개 여단별로 1개 연대로 한다. 이때 타이완 수비 보병 1개 여단은 1개의 본국 연대와

9 村田保定 編, 『明石大將越南日記』, 162~163쪽.

10 村田保定 編, 『明石大將越南日記』, 162쪽.

11 村田保定 編, 『明石大將越南日記』, 164~165쪽. 하지만 이후 타이완 주둔 병력은 1902년에는 2개 혼성여단, 1907년에는 보병 2개 연대(=1개 여단)로 점차 축소되었다.

1개의 토병 연대로 이루어지도록 한다.¹²

이와 같이 아카시는 토병 모집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6년째부터는 1개 보병 여단 내에 일본인과 타이완인 보병 연대가 각각 1개씩 존재하도록 함으로써, 군대 내의 일본인과 타이완인의 비율을 약 1 대 1로 상정했다. 비록 타이완인 부대의 간부로는 일본인을 채용하고 기병·포병·공병 등은 일본 본국에서 징집할 것을 제언했지만, 현지 주민의 저항이 아직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군대에 일본인과 거의 동수의 타이완인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한 것은 상당히 과감한 구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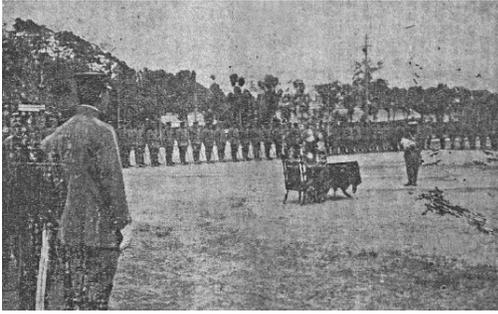
한편 일본은 1904~1905년의 러일전쟁에서 간신히 승리를 거둔 뒤 통감부를 설치하여 대한제국(이하, 한국으로 약칭)을 보호국으로 삼았고, 1907년에는 헤이그 밀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高宗)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한국 군대를 해산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 내에서 의병 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1907년 10월에 아카시가 한국주차헌병대장으로 부임했다. 그는 이듬해 5월에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육군대신에게 보낸 서한에서, 의병 탄압을 위해 본국에서 헌병을 증원받음과 동시에 한국인을 헌병보조원으로 대거 모집하여 일본 헌병대에 부속시킬 것을 상신했다.¹⁴

문제는 한국에서의 진압·보호력 증가를 위해 한국 정부로 하여금 경비를 지출하게 함으로써 4,000명 정도의 한국인을 모집하여 진압 기관의 보조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소관이 계획하는 바는 이 경우 각국 식민지 군대에 토

12 村田保定 編, 『明石大將越南日記』, 167쪽.

13 近藤正己, 「徵兵令はなぜ海を越えなかったか?」, 浅野豊美·松田利彦 編, 『植民地帝国日本の法的構造』, 信山社, 2004는 아카시뿐만 아니라 노기 마레스케(乃木希典)·고다마 겐타로(兒玉源太郎) 타이완총독 등은 장래의 징병제도 도입을 염두에 두고서 호향병(護郷兵, 비한족), 군역지원자(軍役志願者, 한족) 등의 명목으로 타이완인의 군사적 이용을 시도했지만 1903년 무렵에는 중단되었고, 이러한 실패의 경험이 훗날까지 식민지 징병 실시 시기상조론의 근거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14 실제로 1907년 당시 한국주차헌병대의 총 인원 수는 797명(전원 일본인)이었다. 하지만 이듬해에는 일본인 헌병은 2,398명으로 3배 늘어났고, 여기에 한국인 헌병보조원 4,234명이 추가되면서 총 인원 수는 6,632명으로 전년보다 8배 이상 증가했다(松田利彦, 「解説 朝鮮憲兵隊小史」, 朝鮮憲兵隊司令部 編, 『復刻板 朝鮮憲兵隊歴史 1』, 不二出版, 2000, 4쪽).



〈그림 1〉
헌병보조원의 졸업식에 참석한 아카시 모토지로(明石元二郎) 조선주차헌병대 사령관
출처: 『매일신보』 1913년 6월 1일 자 1면.

인을 1명당 2명씩의 비율로 수용하는 것에 따라 헌병 1명당 한국인 보조원 2명을 감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한국인은 물론 징병법에 의하지 않고 지원자를 고용함으로써 민간에 사격 능력이 있는 자를 가급적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목적이고, 유럽 각국 식민지에서 토인을 수용하는 것에 따르고자 합니다.¹⁵

이와 같이 아카시는 구미 제국에서 식민지인들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모방하여 한국인을 헌병보조원으로 채용하고, 해산 군인 등 “민간에 사격 능력이 있는 자”를 받아들임으로써 의병의 전투 능력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이이제이의 효과를 거둘 것을 주장했다.¹⁶ 이는 앞서 살펴본 「타이완 시찰 의견」에서의 토병 구상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¹⁷

다만 여기서 그가 일본인 헌병과 한국인 헌병보조원의 비율을 1 대 2로 상정함으로써, 타이완의 토병 구상에 비해 소수의 일본인만으로도 한국인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본 것은 흥미롭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는 불분명하지만, 아카시는 “한국에서 일본 헌병은 이상하리만큼 평판이 좋고 매우 신뢰

15 1908년 5월 3일 자 테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에게 보내는 아카시 모토지로(明石元二郎)의 서한, 尚友俱樂部史料調査室 外編, 『寺内正毅宛明石元二郎書翰』, 尚友俱樂部, 2014, 20~21쪽.

16 아카시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한국통감에게 헌병보조원 설치의 장점으로 ① 저비용으로 헌병대를 확장시킬 수 있고 ② 헌병의 통역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③ 해산 군인 등을 흡수함으로써 의병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여 이토의 찬동을 얻었다고 한다(朝鮮憲兵隊司令部 編, 『復刻板 朝鮮憲兵隊歴史 1』, 227쪽).

17 이상, 헌병보조원의 성립 과정 및 그 의의에 관해서는 李升熙, 『韓国併合と日本軍憲兵隊: 韓国植民地化過程における役割』, 新泉社, 2008, 95~108쪽; 松田利彦, 『日本の朝鮮植民地支配と警察: 1905~1945年』, 校倉書房, 2009, 54~57쪽을 참조할 것.

를 얻고 있다”고 보도한 『오사카마이니치신문』(大阪毎日新聞) 기사를 스크랩하여 테라우치에게 보내는 서한에 동봉했다.¹⁸ 이러한 점에서 아카시도 일본 및 일본인 헌병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응을 낙관적으로 보고 1 대 2라는 비율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한국 내부(內部) 및 그 산하 경무국(警務局)의 한국인·일본인 관료는 한국인을 헌병보조원으로 채용하려는 계획에 불만을 품고, 이들을 순사대로 편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아카시는 “일본인과 한국인의 비례에 무관심할 경우에는 위험이 몇 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인 헌병보조원을 일본 헌병대에 부속시키는 편이 “감시·감무(監務)가 잘될 것”이라고 반박했다.¹⁹ 여기에서도 타이완 토병 구상과 마찬가지로, 일본 군대 내의 무장한 한국인들을 감시·통제하기 위해 일본인과의 비율 문제를 중시하는 아카시의 자세가 엿보인다고 하겠다.

한편 일본은 러일전쟁 승리를 통해 남만주 내 러시아의 이권 및 사할린 섬 남부를 획득하고 한국을 보호국으로 삼는 등 제국의 판도를 크게 넓혔다. 하지만 막대한 전비 지출로 인해 전후 국가 재정이 압박받는 가운데, 육군은 장래의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군비와 확대된 제국의 지배 체제 강화에 필요한 군비 간의 균형을 고려해야 했다.

그러한 가운데 러일전쟁 이후의 육군 개혁 실무를 담당하여 육군 내 조슈벌(長州閥)의 차기 지도자로 떠오른 사람이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였다. 그는 만주군 참모로서 중군 중이던 1905년 8월에 테라우치에게 보낸 서한에서, 러시아와의 강화가 성립되면 일본 군대는 신속히 만주에서 철수하고 청(淸)의 비용으로 그 군대를 다수 주둔시킴으로써 만·한에서의 일본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등 “오로지 실리주의를 취하여 경제상의 이익을 우선시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전후의 대러시아 군비에 관해서도 “확장이라기

18 1908년 5월 3일 자 테라우치에게 보내는 아카시의 서한, 尚友俱樂部史料調査室 外編, 『寺内正毅宛 明石元二郎書翰』, 22쪽. 3월 22일 자 기사이고 제목은 「일본 헌병의 호평(日本憲兵の好評)」으로 되어 있다.

19 1908년 5월 8일 자 테라우치에게 보내는 아카시의 서한, 尚友俱樂部史料調査室 外編, 『寺内正毅宛 明石元二郎書翰』, 24쪽.

보다는 우선 충실(充實)에 전념하고 공연히 방대한 불충실한 확장은 절대 배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²⁰ 이와 같이 그는 러일전쟁 이후 육군의 군비 정책 및 대륙 정책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전후 군비 목표를 둘러싸고 육군성과 참모본부 간에 대립이 발생하자, 다나카는 1906년 4월에서 7월 사이에 「수감잡록」(隨感雜錄)을 집필하여 전후 경영의 대방침을 정할 것을 제언했다. 이 의견서가 데라우치 및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에게 전달되자 야마가타는 다나카에게 국방방침안(國防方針案) 작성을 의뢰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듬해 4월에 제국국방방침안(帝國國防方針)이 제정되었다는 점은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이다.²¹

그런데 「수감잡록」에서 다나카는 전후 군비의 충실·확장에 필요한 경비를 염출하기 위한 몇 가지 절감책을 제시했다. 거기에는 각 사단 사령부의 규모 축소, 피복비 절약, 장교용 말(馬)의 감축, 현역 장교에 대한 훈장연급 지급 중지 등과 더불어 “한국주차군의 정리”도 포함되어 있었다.

여기서 가장 논구(論究)를 요하는 것은 만·한에서의 병비는 장래에도 현상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의 여부 문제이다. … 이 방면[한국 서·남부]에 주둔하는 군대는 [대러시아] 작전상 아무런 가치가 없고 사실상 전적으로 한국의 안녕 유지의 필요상 제공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곧 현재의 2개 사단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내지의 4개 사단에 상당하는 것 같은 다대한 경비의 대부분은 육군의 책임이 아닌 사항에 소비된다고 해야 한다.”²²

20 1905년 8월 29일 자 데라우치 마사타케에게 보내는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의 서한(「寺內正毅關係文書」, 315-8,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소장).

21 北岡伸一, 『日本陸軍と大陸政策』, 東京大学出版会, 1978, 9쪽.

22 田中義一, 「隨感雜錄」[「田中義一關係文書」, 7,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소장, 원본은 야마구치현립문서관(山口県立文書館) 소장], 210~211쪽. 본 사료는 매우 긴 장문이기 때문에 편의상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는 책자본의 쪽수를 표기했다. 또한 본 사료에는 수정·가필된 곳이 다수 존재하는데, 수정 후의 전문을 활자화한 것이 黒野耐, 「田中義一中佐手記『隨感雜錄』第一回」(『海軍史研究』 第3號, 1995. 4.)와 「田中義一中佐手記『隨感雜錄』第二回」(『海軍史研究』 第4號, 1997. 10.)이다.

이와 같이 다니카는 한국주차군 임무의 본질은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고 한국 내 치안 유지는 한국 통감 및 경찰의 책임이라고 단언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현행 2개 사단 주둔 체제는 “작전상의 목적에 제공되는 군대”인 혼성 1개 여단(일본 본국에서 파견) 및 “정략상의 목적에 제공되는 특종 군대”인 미약한 1개 사단(지원병으로 조직, 한국 정부가 비용 부담) 체제로 개편하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한국 주둔 병력을 약 1개 사단으로 축소할 것을 주장했다.²³ 실제로 육군은 1907년 2월에 한국주차군의 규모를 1개 사단으로 축소하고 이를 통해 염출한 경비로 2개 사단 신설에 착수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다니카는 한국 내 치안 유지를 일본 측에 의뢰하는 만큼 일본 군대의 주둔 비용은 전부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하고, “자국 영토의 안정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한국의 군대는 전부 해산하여 그 비용을 우리 군의 주둔비에 전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도의 토민병”처럼 한국인을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부정했다.

틀리는 바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그 군사 고문으로 우리 육군 장교를 약간 초빙하여 그 군대 편성 임무를 맡기고자 한다고 한다. … 요컨대 이러한 고식적인 수단은 훗날의 화근을 남기는 것이고, 적어도 음험하고 간사한 꾀에 능한 한국인의 독특한 성격을 고려하는 자는 인도의 토민병 제도를 몽상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 기회에 신속히 한국 군대의 해산을 단행하여 근처에서 한국의 병마권을 수용함으로써 훗날의 동요를 예방하고 우리 정권의 기초를 확립해야 한다.²⁴

앞서 보았듯이 아카시는 일본 헌병의 보조 전력으로서, 한국인을 헌병 보조원으로 채용하여 의병 탄압에 이용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그보다 앞선 시기에 다니카는 외적 방어는 물론 국내 치안 유지에서도 한국인을 군사적

23 田中義一, 「隨感雜錄」, 213쪽.

24 田中義一, 「隨感雜錄」, 212쪽.

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몽상”이라고 철저히 부정했다. 이러한 판단에는 다나카가 이른바 “한국인의 독특한 성격”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군대 해산을 훗날의 한국 식민지화를 위한 포석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점 외에, 그가 러일전쟁 이후 군비 정책 및 대륙 정책에서 일관되게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하고 있었다는 점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아카시는 식민지 군대 주둔 비용의 절감, 구미 제국의 선례, 식민지인 지배를 위한 이이제이의 측면에서 타이완인 혹은 한국인을 군사적으로 이용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을 무장시켜 일본 군대에 받아들이는 것의 위험성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3개 혼성여단이라는 다소 과다한 병력 규모를 유지하면서 일본인 군인과 타이완인 토병의 비율을 약 1 대 1로 유지할 것, 혹은 본국에서 헌병을 증원받은 뒤 일본인 헌병 1명이 한국인 헌병보조원 2명을 감시하도록 할 것을 주장하는 등, 식민지인의 군사적 이용 및 이를 전제로 한 현지군 증강을 구상했다. 반면 다나카는 육군 중앙에서 대러시아 작전 및 군비 계획 책정에 관여한 인물로서 경제적·군사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입장에 있었다. 따라서 그에게 러시아에 대한 작전에 투입할 수 없는 한국주차군, 혹은 자국 내 치안도 유지하지 못하는 한국 군대는 감축 혹은 해산의 대상에 불과했다. 그리고 한국인에 대한 편견도 작용하여 그 군사적 이용 가능성은 철저하게 부정한 것이다.

3. 3.1운동 전후 조선인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조선군의 인식

1910년 8월, 결국 일본은 병합조약이라는 형식을 통해 한국을 식민지화했다. 하지만 지켜야 할 국가가 소멸했음에도 식민지 조선에는 군인, 혹은 준군인적인 위치에 있던 조선인들이 존재했다.

첫째는 1907년의 군대 해산 및 1909년의 군부(軍部) 폐지 이후에도 궁궐 경비 혹은 황실 의장을 위해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구한국 군인 약 760명이다. 이들에게는 법적으로 ‘조선군인’이라는 명칭이 부여되었고, 조선주차군

혹은 조선주차헌병대 사령부에 소속되거나 조선보병대 혹은 동 기병대로 편성되었다. 둘째는 1909년 일본에 교육이 위탁된 구 무관학교 학생들이다. 이들은 일본의 한국 병합 후인 1914~1915년에 총 33명이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여 일본 육군 소위로 임관했고 ‘조선인 장교’ 등으로 불렸다.²⁵ 셋째는 앞서 설명한 헌병보조원으로 약 4,500명 규모를 유지했다. 이들은 일본인 헌병의 경찰 업무를 보조하는 존재로서 헌병 상등병에서 육군 일·이등졸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며 헌병 하사 등과 거의 동일한 군복을 지급받는다고 규정되었다.



〈그림 2〉 한국 무관학교 학생으로서 병합 후 일본 육군사관학교 제27기로 졸업한 조선인 장교 출처: 『매일신보』 1915년 6월 19일 자 3면.

선행연구의 지적처럼, 병합 직후 조선에 주둔하던 일본 육군의 고급 군인들은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식민지 조선인의 ‘동화’ 및 장래의 징병령 시행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이들이 그 근거로 든 것이 바로 조선군인, 헌병보조원 등의 존재였다.

우선 헌병보조원의 창시자인 아카시 조선주차헌병대 사령관은 “헌병보조원이나 순사보는 모두 그 형상이 언뜻 봐서는 일본인 헌병이나 순사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진보해왔다. 그것만이 아니다. 그 정신도 일본인과 비슷해졌다.”라고 하면서 조선인의 ‘동화’ 가능성을 낙관했다.²⁶ 다음으로 다치바나 고이치로(立花小一郎) 조선주차군 참모장은 청일전쟁 당시 조선인 인부의 예를 들면서 “조선인은 군인으로서 결코 부적당한 민족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다. 과연 그렇다면 장래 그들을 양성하여 언젠가는 충량한 일본

25 조선군인 및 조선인 장교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으로는 이기동, 『비극의 군인들: 일본 육사 출신의 역사』, 일조각, 1982, 19~28쪽을 참조할 것.

26 『朝鮮人同化論と名士』, 『朝鮮』 第45號, 1911. 11, 3쪽.

군인이 되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라고 지적했다.²⁷ 마지막으로 이구치 쇼고(井口省吾) 조선주차군 사령관도 “[조선군인의] 성적은 대단히 좋아서 결코 세인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위험한 자들이 아니다. 매우 유순하고 군대의 규율을 엄중히 지키고 있다. 군인으로서 상당히 유망하다. 특히 치중병(輜重兵) 등에 가장 유망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평가했다.²⁸

특히 이구치는 1915년 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조선주차군 사령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조선보병대를 몇 차례 검열했고 그 결과에 만족을 표했다. 예를 들어 1915년 4월에는 부임 후 처음으로 조선보병대를 검열한 뒤 “그 성적은 상당히 양호하였다.”라는 감상을 남겼다.²⁹ 또한 이듬해 2월에는 본국에서 파견된 시중무관과 함께 조선보병대 등을 순시했는데, “병졸에 대한 나의 시문(試問, 시중무관 순시의 취지)에의 대답은 모두 놀랄 만큼 명료하고 유창하게 대답하였다.”라며 감탄했다.³⁰

이처럼 이구치는 조선군인의 사례를 통해 조선인을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는 군사참의관(軍事參議官)으로 전보되어 본국으로 돌아온 뒤, 1916년 10월에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신임 조선총독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상신했다.

- 1. 조선 장교에게 서위(敍位)의 은전이 있기를 바랍.
- 1. 조선 장교 은급법 제정을 신속히 진행해주시기를 바랍. …
- 1. 조선인에게 장교 생도 지원을 허가해주시기를 바랍.
- 1. 조선인에게 치중수졸(輜重輸卒)과 같은 단기 의무 복역을 부과하는 것은 이로운데 있고 해로운 것은 없다고 믿음.³¹

27 立花小一郎, 「軍事上より見たる朝鮮民族」, 『朝鮮及滿洲』 第75號, 1913. 10, 14쪽.

28 旭邦生, 「井口軍司令官を訪ふ」, 『朝鮮及滿洲』 第94號, 1915. 5, 9쪽.

29 井口省吾日記刊行會 編, 『井口省吾日記 4』, 講談社, 2018, 301쪽(1915년 4월 9일조).

30 井口省吾日記刊行會 編, 『井口省吾日記 4』, 402쪽(1916년 2월 13일조).

31 井口省吾日記刊行會 編, 『井口省吾日記 4』, 475쪽(1916년 10월 26일조).

우선 첫째와 둘째에 등장하는 ‘조선 장교’는 일본 육사를 졸업한 조선인 장교가 아니라 조선군인 내의 구한국 장교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들에 대한 서위·은급(恩給)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그 대우를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셋째, 조선인에게 육사의 문호를 개방할 것, 넷째, 마치 일본인 헌병대 조선인 헌병보조원의 관계처럼 치중병의 감독 아래에서 군수품 운반에 종사하는 치중수졸로 조선인을 이용할 것을 제언했다. 특히 그가 조선인에 대해 지원 제도가 아닌 “단기 의무 복역을 부과”할 것을 구상한 것은 주목된다. 즉 그는 조선인 장교를 재생산하고 조선인들에게 단기 병역을 부과함으로써 장래의 본격적인 징병 실시의 포석으로 삼고자 했다.

한편 이 문제에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던 사람은 우쓰노미야 다로였다. 그는 이른바 우에하라파(上原派)³²의 중진으로서 1918년 7월에 조선군 사령관에 임명되었다. 그런데 그는 청일전쟁 이후부터 구미 열강과의 ‘인종 경쟁’을 의식했고, 이에 대비해 아시아의 각 민족을 ‘구제’하기 위해 일본과 청·한국 간의 연방 혹은 동맹을 구상했다.³³ 또한 병합 전부터 일본 육사 출신자나 정치적 망명객 등 다수의 한국인들과 친분이 있었고,³⁴ 영국 주재 무관으로 근무한 경험 때문에 그 식민지인 인도나 이집트에 관한 지식도 풍부한 인물이었다.³⁵

그는 1918년 8월 조선에 부임할 당시 예전부터 친분이 있던 조선군인들의 마중을 받았다.³⁶ 그리고 현지에서 조선군인이 처한 상황 및 그들의 이용 가치를 파악한 뒤, 11월의 도쿄(東京) 출장을 기회로 당시 하라 다카시(原敬) 내각의 다나카 기이치 육군대신과 조선인의 군사적 이용 문제에 관해

32 우에하라파(上原派)는 사쓰마(薩摩) 출신의 우에하라 유사쿠(上原勇作)를 옹립하여 주로 참모본부를 거점으로 삼아 조슈벌(長州閥)에 의한 육군 지배의 타파, 참모본부 강화, 적극적 대륙 정책 추진이라는 3가지 주장에 의해 결속한 육군 내 비주류파 집단을 가리킨다(北岡伸一, 『日本陸軍と大陸政策』, 74~77쪽).

33 宮本正明, 「宇都宮太郎と朝鮮支配」, 158~163쪽.

34 宮本正明, 「宇都宮太郎と朝鮮支配」, 166~167쪽.

35 吉良芳恵·宮本正明, 「解題 大正時代中期の宇都宮太郎: 第四師団長·朝鮮軍司令官·軍事參議官時代」, 13쪽.

36 『宇都宮日記 3』, 134쪽(1918년 8월 10일조).

상담하여 대체로 동의를 얻었다.³⁷ 그 결과 이듬해 1월에는 다나카에게 서한을 보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행할 것을 권유했다.

1. 조선인으로 국경 수비대를 편성할 것.
지원 제도, 장기 복역, 대처(帶妻) 가능, 퇴영사금(退營賜金), 은급.
2. 조선인으로 근위병을 만들 것.
3. 조선인 장교를 시종무관 혹은 동 무관 소속(付)으로 채용할 것.
4. 우리 군 사령부에 부관 혹은 소속으로 조선인 장교를 쓰고자 함. 가봉(加俸)의 건.
5. 현역 구한국 무관에게 서위의 건.
6. 상동 서훈 및 훈장 진급의 길을 열 것. ...³⁸

이상의 우쓰노미야의 구상을 앞서 살펴본 이구치의 구상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쓰노미야도 조선군인에 대한 서위·서훈 등 대우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현재 존재하는 조선인 장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했다. 셋째, 조선인을 치중수졸이 아닌 국경 수비대 등의 실제 전력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근위병이나 시종무관 등으로 조선인을 채용한다는 것은 황실이라는 제국 통치 기구의 심장부를 식민지인에게 개방한다는 점에서 대단한 발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는 이구치의 구상 같은 조선인 장교의 재생산이나 조선인들에 대한 병역 부과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우쓰노미야의 말에 따르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교적 실행하기 쉬운 것”을 든 것에 불과했으므로 “그 외에 근본적으로 해야 할 것”에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그로부터 두 달 뒤에 3.1운동이 발발했다. 우쓰노미야는 본국으로부터 6개 보병 대대, 보조헌병 300명 등을 증원받자마자 운동을 철저히 진압할

37 『宇都宮日記 3』, 185쪽(1918년 12월 13일조).

38 『宇都宮日記 3』, 198~199쪽(1919년 1월 6일조).

것을 지시했고, 그 결과 제암리 학살 사건을 비롯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그에게 3.1운동의 발발은 '동화' 촉진 수단으로서 조선인의 군사적 이용 및 이를 전제로 한 조선군 증강을 더욱 절실한 문제로 만들었다.

즉 1919년 5월 14일에 다나카는 우쓰노미야에게 전보를 보내어, “이번 사건에 비추어 조선 통치 방침 및 총독부 관제, 그 외에 각 제도의 개혁을 요하는 것”에 관한 “숨김없는 의견”을 요청했다.³⁹ 이에 대해 3일 뒤에 “참모장 등에게도 상의하지 않은 완전히 일개 사건”으로 제출한 것이 바로 「조선시국 관견」(朝鮮時局管見)이다. 여기에서 우쓰노미야는 조선의 독립이나 자치는 인정하지 않고 조선에서의 일본 헌법 시행 등 완전한 '동화'의 실현을 최종적인 목표로 내세웠다. 그리고 이를 위한 조치로서 가장 낮은 단계의 지방자치 제도 실시, 중앙 권력의 지방 이양, 헌병경찰 제도에서 보통경찰 제도로의 전환, 일본인 이민 촉진 등을 제시하는 한편, 군사에 관한 항목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7. 장래의 군비는 내지인 군대 적어도 5개 사단에 상당하는 병력에 일부 조선인(당분간은 지원병) 부대를 배치할 것. ...

면 장래에 완전히 헌법이 실시되면 조선인에게도 점차 징병령(처음에는 물론 제한적)을 시행하여 조선인도 국군의 일부에 편입시켜야 함은(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를 합친 뒤 영원히 그 토인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그 예가 거의 드물고 그러한 나라는 결코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함) 아마도 필연적인 운명이다. 따라서 그 준비로서, 또 당장은 조선인에게도 희망에 따라 병역에도 복무할 수 있음을 보이고, 특히 현재 및 장래에 임관할 조선인 장교(사관후보생 출신자)의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 당분간은 지원한 조선인으로 일단 약간의 소부대를 시험적으로 편성할 것을 희망한다(지금 당장이라는 의미는 아님). ...⁴⁰

39 『宇都宮日記 3』, 253쪽(1919년 5월 14일조).

40 宇都宮太郎, 「朝鮮時局管見(寫)」(1919년 5월 17일 자, 「齋藤實文書」, 서류의 부, 104-3,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소장).

우선 우쓰노미야는 조선의 면적이나 인구를 일본 본국과 비교할 때, 현재의 2개 사단이 아닌 6개 혹은 10개 사단을 주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1운동의 충격 속에서 조선 지배를 확실히 함과 동시에 “장래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할 조선인 부대”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5개 사단은 결코 과다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그는 모든 제국은 식민지인을 군사적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불가능한 제국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마지막으로 장래의 징병 실시를 위한 준비 조치로서는 물론, 일본은 결코 조선인을 위협시키거나 제국 내의 이질적인 존재로 간주하지 않음을 보이고 또 장래에 재생산될 조선인 장교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지원 제도에 의한 조선인 부대를 편성할 것을 주장했다.

그런데 우쓰노미야가 조선인 부대와와의 “균형” 측면에서 5개 사단론을 정당화한 것처럼, 그도 조선인을 군사적으로 이용할 경우 일본인과 조선인 간의 비율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제시한 비율은 병합 전에 아카시가 제시한 일본인 군인과 타이완인 토병, 혹은 일본인 헌병과 한국인 헌병보조원의 비율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내지인 군대가 5개 사단에 상당하는 병력을 넘지 않는 동안에는 이 조선인 부대는 최대 5개 혼성여단(조선인의 인구에서 보더라도 완전한 헌병 실시 이후에는 적어도 이 정도 병력은 징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에 상당하거나 그 이하(면 장래의 일)에 그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 즉 2 대 1의 비례이고 인도에서 영국인 병사 1에 대한 토인병(土人兵) 2의 비례와는 완전히 반비례이다.⁴¹

이와 같이 우쓰노미야는 조선에 일본 육군 5개 사단을 주둔시킬 경우 이와는 별도로 편성할 조선인 부대 규모의 상한을 5개 혼성여단으로 상정함으로써, 일본인 군인이 조선인 군인에 대해 최소 2배의 우위에 서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인도에서 영국인 군인과 인도인 토병의 비율이 1 대 2라는

41 宇都宮太郎, 「朝鮮時局管見(寫)」.

것, 혹은 아카시가 같은 부대에 일본인과 타이완인을 1 대 1로 편성할 것을 구상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우쓰노미야는 인도는 다민족·다문화 국가이고 인도 주변에는 강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선과는 사정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3.1운동이 일본의 조선 지배 질서 및 조선인의 ‘동화’에 대한 자신감에 가한 충격이 그만큼 컸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상의 사항은 단지 우쓰노미야의 사건을 넘어 조선군의 공식 견해도 반영되었다. 1919년 7월에 조선군 참모부는 육군성에 「소요의 원인, 조선 통치상 주의해야 할 건 및 군비에 관하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육군대신 등이 열람한 이 의견서에서, 조선군 참모부는 조선 주둔 2개 사단과는 별도로 국경 수비 및 각지의 치안 유지를 전담하는 4개 독립수비대(총 12개 보병 대대, 즉 1개 사단 규모)를 신설하는 한편, 조선인 부대를 편성하여 거기에 편입시킬 것을 주장했다.

2. 독립수비대 내에 일부 조선인 부대를 편성하여 가입시킴과 동시에 수비 근무에 복무하도록 할 것을 요한다.

조선인으로 하여금 내지인과 함께 국방 및 내지 수비의 부담을 느끼도록 하고 또 조선인 장교로 하여금 그 위치를 얻도록 하기 위해 조선인 부대(당장은 용병) 편성을 필요로 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장래의 징병령 시행 준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그 병력은 우선 1개 독립수비대 내에 2~3개 중대를 섞어 넣고 점차 이를 늘려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⁴²

여기서도 앞서 살펴본 우쓰노미야의 발상과 동일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조선인으로 하여금 일본인과 함께 병역을 체험하도록 하고 조선인 장교의 자리를 마련하는 한편 장래의 징병 실시를 준비하기 위해 조선인 부

42 「騒擾の原因及朝鮮統治上注意すべき件並軍備に就いて」(1919년 7월 14일 자, 일본 아시아역사자료 센터, JACAR Ref.C06031106200, 화상 번호 68~69, 「朝鮮騒擾事件關係書類」大正8年乃至同10年·共7冊其4,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소장).

대를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이다. 다만 1개 독립수비대의 평균 규모가 3개 보병 대대(12개 보병 중대)인데 거기에 조선인 부대를 2~3개 중대 편입시키는 만큼, 독립수비대 내의 일본인과 조선인의 비율은 4 대 1에서 6 대 1 까지 벌어진다. 이 점에서 3.1운동 후 조선군은 일본인의 확실한 수적 우위 아래에서 군대 내의 조선인들을 감시·통제하면서 점차 그 수를 늘려나갈 것을 구상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병합 직후부터 조선군은 식민지 조선인의 ‘동화’ 및 그 군사적 이용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보았으며, 그때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이 바로 조선 군인, 헌병보조원 등의 존재였다. 그리하여 이구치, 우쓰노미야 등은 조선인 장교를 재생산할 것, 지원 혹은 단기 병역 부과에 의해 조선인을 군사적으로 이용할 것, 더 나아가 근위병이나 시종무관으로 조선인을 채용하여 황실을 식민지인에게 개방할 것 등을 구상했다. 한편 3.1운동 발발 당시 조선군은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주체였음에도 ‘동화’ 달성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이를 위한 방법 중 하나로서 조선인 부대 편성을 주장했다. 그리고 이는 일본의 조선 지배 및 군대 내 조선인에 대한 일본인의 수적 우위를 확실히 하기 위한 조선군 증강 주장과 일체화되어 제기된 것이다.

4. 조선인의 군사적 이용 문제에 대한 육군 중앙의 인식

그렇다면 조선인의 군사적 이용 문제에 관해 육군 중앙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우선 병합 직후에 육군 중앙은 조선군보다 이 문제에 냉담했다. 즉 조선인에게 육사의 문호를 개방하거나 조선군인의 대우를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은 물론, ‘동화’ 촉진 등 조선 지배 정책의 차원에서 조선인 부대를 편성하거나 조선 주둔 병력을 증강한다는 발상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메이지(明治) 말기부터 다이쇼(大正) 초기에 걸쳐 정치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2개 사단 증설 문제이다. 러일전쟁 이후 일본 육군은 25개 사단 정

비, 해군은 전함 8척과 장갑순양함 8척의 이른바 8·8 함대 편성을 군비 목표로 설정한 이래, 내각·육군·해군 간에는 군비 예산 획득 및 육해군 간의 우선순위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이 이어졌다. 특히 육군은 1911년 말의 신해혁명(辛亥革命) 발발을 명분으로 식민지 조선에 상시 주둔시킬 2개 사단 증설을 강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듬해 12월에 우에하라 유사쿠(上原勇作) 육군대신은 단독 사직했고, 이로 인해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 내각은 총사직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육군 및 조슈벌에 대한 국민의 반발을 불러일으켜서 다이쇼정변(大正政變)으로 이어졌다는 점, 결국 2개 사단 증설은 1차대전 발발 후인 1915년에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 내각에 의해 실현되었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내각에서 사단 증설안이 최종 부결되기 직전인 1912년 11월 말에 육군은 「2개 사단 증설 이유서」(二師團増設理由書)를 수상 이하 각 대신에게 배포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육군이 조선 주둔 사단 증설을 정당화하기 위해 러시아의 시베리아 철도 복선화 및 헤이룽강(黑龍江) 노선 신설, 신해혁명으로 인한 중국의 혼란 등 대외적 국방 환경의 변화를 주요 근거로 들었다는 점이다. 한편 조선에 관해서는 현행 1개 사단의 교대 파견에는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는 점, 조선 내 치안 유지를 위해 군대를 각지에 분산 배치했기에 러시아에 대한 초기 작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고 있는 반면, 조선인을 일본 군대에 받아들이기 위해 조선 주둔 병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주장은 찾아볼 수 없다.⁴³ 이처럼 육군 중앙 차원에서 2개 사단 증설은 전적으로 대러시아 작전상의 문제였지 조선 지배 정책상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조선인 장교의 재생산 문제를 살펴보겠다. 1915년 12월에 어

43 「二師團増設理由書」(1912년 11월 23일 자, 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 JACAR Ref.C14061034400, 「二個師團増設理由書 同所要額調」,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소장). 육군성 군무국에서 인쇄한 것이다. 참고로 이와 거의 같은 시기에 우에하라 유사쿠(上原勇作) 육군대신이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 수상에게 보낸 서한, 그리고 우에하라가 단독 사직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다나카 기이치 육군성 군무국장의 회고담도 이와 거의 동일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高倉徹一編, 『田中義一傳記上』, 原書房, 1981 복각, 원본은 田中義一傳記刊行會, 1958, 490~493쪽, 506~517쪽).

편 조선인 청년이 일본 육군지방유년학교 생도로 입학 지원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성부(京城府)로부터 통지받은 조선주차군은 이 사실을 육군성에 보고하고 그 처리 방법을 문의했는데, 이에 대해 육군성은 다음과 같이 회답했다.

(조선인은 앞으로 당분간 장교 생도로 채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원자가 있다면 모나지 않게 각하하도록 처리해주시기 바란다).

종래에 조선인·타이완인에 대해서는 위의 방침에 따라 원서를 수리한 적이 없고 교육총감부도 같은 의견이다(현재 부대나 학교에 있는 이들은 특별한 논의에서 나온 것이고 일반에 적용할 것이 아니다).⁴⁴

우선 육군성은 조선인 혹은 타이완인을 장교 생도로 채용한 선례가 없고 앞으로도 당분간 그럴 계획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막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부대에 배치되었거나 육사에 재교 중인 조선인 장교에 대해서도 한국 병합 과정의 “특별한 논의”에서 나온 이례적인 존재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같이 당시 육군성은 조선인들에게 육사의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조선인 장교를 재생산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한편 “모나지 않게” 입학 지원을 각하하도록 했다는 점이나 위 인용문 중 괄호 안의 부분은 암호로 발송했다는 점에서, 육군성은 이 문제가 알려질 경우 조선인의 감정을 자극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육군 중앙의 이러한 자세는 조선군인 문제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앞서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구치, 우쓰노미야 등 조선군 사령관들은 서위·서훈·은급 등의 측면에서 조선군인의 대우를 개선할 것을 조선총독 혹은 육군대신에게 상신했다. 실제로 1915년 11월 조선총독부는 조선군인 및 헌병보조원의 은급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그 법률안을 육군

44 「朝鮮人の幼年學校生徒志願に關する件」(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 JACAR Ref.C02030726800, 화상 번호 2, 「大日記甲輯」大正4年·第1·2類,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소장).

성에 제출했다.⁴⁵ 하지만 이듬해 5월에 육군성은 이를 좀 더 간편한 유족 부조에 관한 칙령안으로 수정했는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조선군인은 이른바 과도기의 유물이고 제국 국방상 필수적인 하나의 기관으로서 그 존립을 인정받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 특히 조선군인은 매년 장교의 감소에 따라 점차 소멸되기에 이를 성질의 것이므로 특별히 법률상의 권리로 그들의 장래를 보호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컨대 상당한 부조 제도를 두어 그들 장래의 생계를 보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여 그들의 이반을 막음으로써 통치상의 편리함을 거둘 수 있다면 그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인정된다.⁴⁶

원래 조선군인은 한일 양국의 '대등'한 병합 및 구한국 황실에 대한 일본의 우대를 연출하기 위한 장치로서, 한국 병합으로 인해 지켜야 할 국가가 사라졌음에도 궁궐 경비 혹은 황실 의장을 명목으로 남아있었다. 따라서 육군성은 조선군인을 “과도기의 유물”이자 점차 소멸될 존재로 보았으며, 그 국방상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장교도 새로 충원할 계획이 없었다. 또한 조선군인에 대한 부조 제도도 그들이 현역을 물러난 뒤에도 군인으로서의 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닌, 단지 그들의 이반을 예방하여 조선 지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회유책에 불과했던 것이다.

한편 3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3.1운동 발발 직전에 우쓰노미야는 다나카 육군대신에게 조선인의 군사적 이용 문제를 상담하여 대체로 동의를 얻었고, 또 운동 발발 후에는 다나카의 요청에 따라 「조선 시국 관견」을 제

45 「朝鮮軍人憲兵補助員の恩給法制定に關する件」(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 JACAR Ref. C02030884000, 화상 번호 28~40, 「大日記甲輯」大正8年・第3類,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소장). 조선군인에 대한 은급 제도 도입을 주장한 것은 테라우치 마사타케 조선총독 및 아카시 모토지로 전 조선주차헌병대사령관이었다고 한다(화상 번호 26~27).

46 「朝鮮軍人憲兵補助員の恩給法制定に關する件」(화상 번호 20). 실제로 1918년 7월에 조선군인 및 조선군인 유족 부조령이 칙령으로 제정되었다.

출하여 조선인 부대 편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 후 양자는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3.1운동의 선후 조치에 나서게 되는데, 거기에는 조선군인이나 조선인 장교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우선 조선군인에 대해서는 서위·서훈·진급·급여·은급 등의 측면에서 차별 대우를 철폐하는 한편, 그중 장교(및 동 상당관(相當官))들을 일본 육군 장교(및 동 상당관)로 삼아 육군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 다음으로 조선인 장교들은 3.1운동의 영향을 받아 동요하고 있었고 그중에는 일본 육군을 벗어나 독립 운동에 투신하는 자도 나왔다.⁴⁷ 따라서 이들을 조선으로 불러들여 지배 정책에 활용함과 동시에 조선인에 대한 ‘평등’한 대우 및 ‘동화’의 상징으로서 그 존재를 선전했다. 마지막으로 헌병보조원에 대해서는 육군성령에 의해 규정된 헌병보로 개편함으로써 육군의 일원임을 명확히 하고 진급·은급 제도 등도 마련했다.

그럼에도 조선인의 군사적 이용 및 이를 전제로 한 조선군 증강 문제에서는 양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우쓰노미야는 1919년 9월의 도쿄 출장을 기회로 다나카를 방문하여 「조선 시국 관견」과 동일한 논리로 조선 내 군비 부족을 호소했고, 조선 주둔 부대의 신설이 어렵다면 일단 본국의 부대를 조선에 이전시킬 것을 요청했다.⁴⁸ 그리하여 다나카 등과 사전 협의가 끝났다고 판단한 그는 12월에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신임 조선총독을 설득해, “상당한 병력을 이곳 조선에 증설하시거나 부득이하다면 내지 사단 약간을 이곳에 일단 이전하시기를 바란다”는 조선 군비 증가 청구안을 하라다카시 수상에게 제출하도록 했다.⁴⁹

하지만 이 문제에 관하여 하라로부터 상담을 받은 다나카는 “조선의 현 사단 충실은 1920년도 예산에 계상했으므로 대체로 그것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한다”고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기에,⁵⁰ 하라도 이러한 취지를 사이토에

47 이기동, 『비극의 군인들: 일본 육사 출신의 역사』, 28~31쪽.

48 『宇都宮日記 3』, 305쪽(1919년 9월 15일조). 또한 우쓰노미야는 하라 다카시(原敬) 수상을 방문하여 동일한 요청을 하였다(原奎一郎 編, 『原敬日記 5』, 福村出版, 1965, 145쪽, 1919년 9월 17일조).

49 『宇都宮日記 3』, 336, 340~341쪽(1919년 11월 26일, 12월 4~5일조).

50 原奎一郎 編, 『原敬日記 5』, 187쪽(1919년 12월 9일조).

게 전달했다.⁵¹ 실제로 그해 육군 예산에는 조선 주둔 2개 사단의 완성 시기를 1년 앞당기는 한편, 3.1운동 진압을 위해 본국에서 파견된 병력의 일부를 조선군에 편입시킴으로써 고정원(高定員)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이 계상되는 데에 그쳤다.⁵² 그 후에도 우쓰노미야는 5개 사단론을 고집했지만,⁵³ 결국 실현되지는 않았다.

한편 앞서 보았듯이 우쓰노미야는 장래의 조선인 장교의 재생산을 기정 사실화했고 그들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조선인 부대 편성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는 조선인에 대한 육사 문호의 개방을 육군 중앙에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920년 5월에 조선군 사령부를 방문한 아마나시 한조(山梨半造) 육군차관과 회담한 뒤 “조선인 장교 생도의 건은 미해결”이라고 일기에 기록했다.⁵⁴ 이는 1921년 1월에 일본 해군이 3.1운동 후 격변한 “조선의 실정” 및 “사위(四圍)의 정세”를 들면서 조선인을 해군병학교 생도로 채용할 것을 결정한 것과는 대조적이다.⁵⁵

더 나아가 3.1운동 이후 일본에서는 조선인을 위협시키고 그들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주저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1921년 4월에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군인등급법을 조선인 헌병보에게도 적용하여 은급을 지급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제국의회 중의원 위원회에서 동 법률안을 심사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문답이 이루어졌다.

기무라 곤에몬(木村權右衛門)[위원회 위원, 무소속] 군: “한 가지 묻겠습니다. 헌병보

51 1919년 12월 21일 자 사이토 마코토(齋藤實)에게 보내는 하라 다카시의 서한(「齋藤實文書」, 서한의 부, 1265-2).

52 陸軍省 編, 『自明治三十七年至大正十五年 陸軍省沿革史 附錄』, 巖南堂書店, 1968 복각, 원본은 1929, 365~367쪽.

53 우쓰노미야는 1920년 3월 21일에 조선 주둔 각 사단장, 조선군 참모장 등을 만찬에 초대하여 “조선에서의 나의 군비 의견(작년 5월에 대신에게 제출한 60개 대대안)”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宇都宮日記 3』, 381쪽). 참고로 1개 사단에는 12개 보병 대대가 존재하므로 “60개 대대”는 곧 5개 사단 규모에 해당된다.

54 『宇都宮日記 3』, 400쪽(1920년 5월 17일조).

55 「朝鮮人ヲ生徒ニ採用ノ件」, 海軍大臣官房 編, 『海軍制度沿革 12』, 海軍大臣官房, 1940, 476쪽. 하지만 조선인 해군 장교의 임관은 끝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일본인을 채용하고 있습니까?”

야마나시 [한조] 정부위원: “조선인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어를 모르
면 국경 감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기무라 곤에몬 군: “그들에게는 어떠한 군사상의 교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마나시 정부위원: “이는 특별히 3개월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무라 곤에몬 군: “조선인을 교육하는 것입니까?”

야마나시 정부위원: “조선인을 채용한 뒤 헌병 근무를 교육시키는 것입니다.”⁵⁶

헌병보가 일본인인지 조선인인지, 앞으로도 조선인을 헌병보로 채용할 지, 그리고 이들에게 군사 교육을 실시할지 거듭 질문하는 모습은 귀족원 위원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⁵⁷ 3.1운동의 기억이 아직 생생한 가운데 제국 일본 내에 군사 교육을 받은 조선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의원들의 당혹감이 엿보인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처럼 조선인을 위협시키는 인식이 기존의 경제적·군사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자세와 맞물리면서, 조선인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육군 중앙의 자세를 한층 더 소극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병합 직후에 육군 중앙은 조선 지배 정책의 측면에서 2개 사단 증설을 주장한 것은 아니었고, 또 조선군 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조선인에게 육사의 문호를 개방하거나 조선군인의 대우를 개선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다. 한편 3.1운동의 선후 조치에서 다나카는 우쓰노미야와 대체로 협력 관계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우쓰노미야가 주장한 조선인 장교의 재생산, 조선인 부대 편성 및 이를 전제로 한 조선군 증강에는 소극적이었다. 그 배경에는 러일전쟁 이후의 경제적·군사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자세와 함께, 1차대전 종결 후 군축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군비 증강을 추진하는 것의 정치적 부담감, 그리고 3.1운동의 충격 속에서 조선인을 일본 군

56 「第四回帝國議會衆議院委員會議錄 大正九年法律第十號中改正法律案外一件」(제1회, 1921년 3월 9일, 1쪽,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제국의회 회의록 검색 시스템).

57 「第四回帝國議會貴族院委員會議事速記錄 大正九年法律第十號中改正法律案外一件」(제1호, 1921년 3월 15일, 2쪽,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제국의회 회의록 검색 시스템).

대에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불안감 등이 존재했다고 생각된다. 결국 3.1운동 후 조선군인, 조선인 장교, 헌병보는 육군의 일원이 되어 제국 일본에 편입되었지만 확대·재생산되지는 않은 채 그대로 동결된 것이다.

5. 나가며

지금까지 한국 병합부터 3.1운동 후까지 조선인의 군사적 이용 문제에 관한 육군 내 논의를 조선군과 육군 중앙을 축으로 살펴보았다. 조선군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조선인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적극적이었으며, 특히 우쓰노미야는 3.1운동 발발로부터 두 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조선의 '동화' 촉진 방법 중 하나로서 조선인을 일본 군대에 받아들일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육군 중앙은 조선인 지원병 부대 편성 및 조선군 증강, 조선인 장교의 재생산 등 우쓰노미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3.1운동을 계기로 일본 본국에서는 조선인을 위협시키는 인식도 등장했기에, 조선인의 군사적 이용은 그 후로도 한동안 실현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관하여 양자의 인식 차가 발생한 이유 및 그 후의 전개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카시, 이구치, 우쓰노미야 등 조선헌병대 혹은 조선군에서 활동한 이들은 영국·프랑스 등 구미 제국의 식민지 군대의 선례를 중시했다. 또한 현지에서 조선인들을 접하면서 그 인적자원으로서의 잠재적 활용 가치를 항상 의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식민지 조선에서 징병을 실시할 수 있을 만큼의 '동화'를 촉진한다는 조선 지배 정책의 측면에서 군이 앞장서서 조선인을 군사적으로 이용하고, 또 조선인을 일본 군대에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하여 조선 주둔 병력을 증강할 것을 주장했다. 비록 3.1운동 이후 군대 내에서 일본인이 조선인보다 확실히 우위에 있도록 양자의 비율은 조정되었지만, 조선인 부대 편성 및 조선군 증강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욱 절실해졌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주로 육군 중앙에서 활동한 다나카는 위의 아카시, 우쓰노미야 등과는 입장이 달랐다. 그는 러일전쟁 이후 러시아의 복수전에 대비한 작전·군비라는 당면의 목표,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예산 및 국내 정치적 환경이라는 정치·경제·군사적 합리성을 중시했다. 따라서 조선인의 군사적 이용은 ‘동화’ 촉진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조선에서 징병을 실시할 수 있을 만큼의 ‘동화’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실행할 수 있는 최종적인 목표에 불과했다. 또한 조선인을 받아들이기 위해 조선군을 증강한다는 발상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에 다수의 사단을 주둔시킬 경우의 비용 문제 및 전시 동원상의 불리함, 1차대전 종결 후 일본 국내에서 고조되기 시작한 군축 여론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조선인의 군사적 이용 문제에 관한 양자의 대립은 그 후로도 이어졌다. 우선 사이토 마코토 조선총독은 1923년 11월에 조선에 사단을 추가로 주둔시킬 것을 야마모토 곤베에(山本權兵衛) 수상에게 요청했다.⁵⁸ 실제로 육군 개혁을 위해 설치된 제도조사위원회는 1924년 7월 말의 보고서에서 본국의 1개 사단을 조선에 이전시킬 것을 결정했지만, 가토 다카야키(加藤高明) 호헌 3파 내각의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육군대신은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이를 중지했다.⁵⁹ 사이토는 1925년 7월에도 사단 혹은 기병여단 이전을 우가키에게 요청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⁶⁰

다음으로 조선인에게 육사의 문호를 개방하는 문제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해군은 이미 1921년 1월에 조선인 해군병학교 생도 채용을 결정했지만, 육군은 “이론자”(異論者)도 있었기에 1924년 12월이 되어서야 조선인 및 타이완인에게 무관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고 육군 각 학교에의 원서를 수리할 것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식민지인 지원자를 채용할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행정상의 재량에 의해 엄밀한 전형과 인원상의 제

58 「朝鮮に陸軍兵力増加を要する件に付總理大臣に具申の件」(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 JACAR Ref. C03022597400, 「密大日記」大正12年·第1冊,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소장).

59 高杉洋平, 『宇垣一成と戦間期の日本政治: デモクラシーと戦争の時代』, 吉田書店, 2015, 27쪽, 32쪽.

60 「朝鮮に常設師團増加の意見」(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 JACAR Ref.C03022721700, 「密大日記」大正14年·第4冊,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소장).

한을 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또한 경쟁률도 높아서 실제 지원자는 있었지만 채용되지는 않았다.⁶¹ 결국 구한국 황족인 이른바 왕공족(王公族) 및 그 학우(學友) 등 정책적으로 육사 입학이 허락된 이들을 제외하면 조선인 장교는 그 후로도 당분간 거의 배출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조선군인으로 구성된 조선보병대의 활용·존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926년 12월에 조선군은 장래 조선에서의 병역법 실시 혹은 지원병 부대 편성에 대비하여 조선인의 군사적 자질을 시험하기 위해, 현재의 조선보병대에 일본 보병 부대와 동일한 수준의 실전 훈련을 실시할 것을 육군성에 상실했지만 각하되었다.⁶² 또한 1929년 7월에 조선군은 조선보병대가 병합 당시 구한국 황실 우대 차원에서 존치되었다는 점, 제대병은 “양민”으로서 “내선융화”(內鮮融和)에 일조하고 있다는 점, 유사시에 후방 근무나 통역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면서 동 보병대의 폐지에 반대했고, 동시에 일본 육사 출신 조선인 장교를 부대장으로 임명할 것을 육군성에 건의했다.⁶³ 하지만 결국 순종(純宗)의 사망과 경비 절감 등을 이유로 조선보병대는 1931년 4월에 폐지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인의 군사적 이용 문제를 둘러싼 조선군과 육군 중앙의 대립은 1930년대 중반까지도 해소되지 않았다. 결국 조선인의 육사 졸업 및 육군 소위 임관은 1937년부터 본격화되었고, 조선인 지원병 모집에 관한 육군특별지원병령도 1938년 2월에야 제정되었다. 즉 조선인의 군사적 이용이 실현되는 데에는 대외 전쟁의 발발이라는 새로운 계기가 필요했던 것이다.

61 「朝鮮人學生陸軍軍醫依託志望の件」(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 JACAR Ref.C01003853200, 화상 번호 6~7, 「密大日記」昭和4年·第2冊,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소장), 「朝鮮人台灣人を陸軍武官候補者に採用の件」(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 JACAR Ref.C02031211800, 화상 번호 4, 「大日記甲輯」大正14年·第2類,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소장).

62 「朝鮮歩兵隊訓練向上に關する内議の件」(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 JACAR Ref.C01003726500, 화상 번호 3~7, 「密大日記」昭和2年·第2冊,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소장). 이에 관하여 육군성 군무국 징모과(徵募課)는 아직 조선의 ‘동화’가 달성되지 않았고 조선인에게 참정권 등이 부여되지 않은 상황에서 병역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으며 군사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첨부하였다.

63 「朝鮮歩兵隊存置に關する意見の件」(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 JACAR Ref.C01003881700, 「密大日記」昭和4年·第4冊,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소장).